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II 주요 내용

1. 법률 적용 대상
2. 부정청탁의 금지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4. 위반행위 신고 · 처리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5. 징계 및 벌칙

I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일반국민의 62.8%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14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
-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2 추진경과

- 국무회의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 보고 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 공개토론회('11.10월, '12.2월),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 연구('12.4월~7월), 광주·대전·부산 등 권역별 대국민 법안 설명회 개최('12.4월~5월) 등
- 정부입법절차 진행('12.5.7~'13.7.30)
- 관계기관 의견 조회·협의,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 정부안 국회 제출('13.8.5)
-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5.1.12)
-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15.3.3)
- 국무회의 의결('15.3.24)
- 공포('15.3.27), 시행('16.9.28)

II

법률안 주요 내용



1 법률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일반 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2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
- 또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제5조제1항)

제5조(부정청탁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벌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부대 배속·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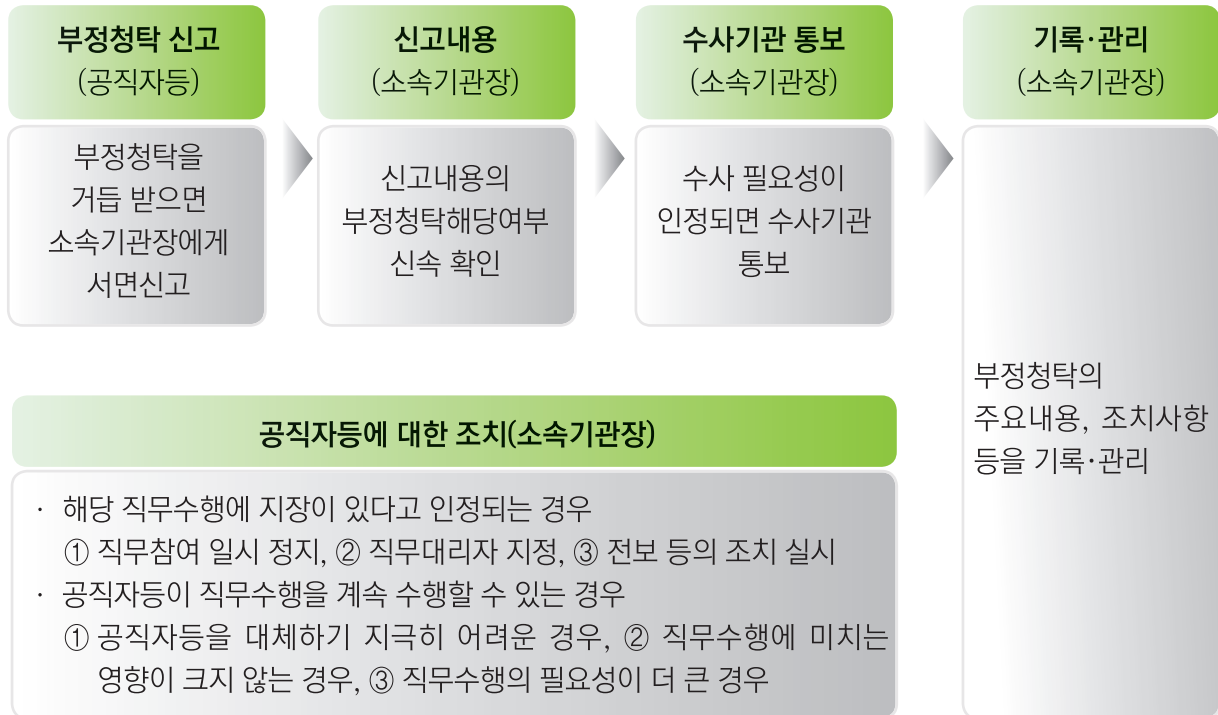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위반시 제재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사 인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건전한 의사소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벌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거듭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 · 조치사항 등을 기록 ·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 ※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사유(제7조제5항)
 -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는 직무 수행 가능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수수 금지 금품등 및 처벌 수준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 등은 **예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 동호인회 · 동창회 · 향우회 · 친목회 · 종교단체 ·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표시한 경우 제외

나.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징계처분**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 신고 접수 · 처리절차



-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조사기관은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 · 수사 또는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아울러,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을 지급

5 징계 및 벌칙

- 공직자의 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 **형벌·과태료와 징계는 병과**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공직자 제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수수 금지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 형사처벌〉 ·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 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1백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과태료 부과〉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 한 공직자 *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금품등을 공직자 또는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기준초과 강의 사례금을 수수한 공직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